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경주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6. 6.



경 상 북 도

통 보·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 5급 특별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르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 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유 등으로 경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명예퇴직대상자 중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결을 통해 특별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개최한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6급 \$\$\$의 경우에는 ☆☆☆☆.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재직 중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 ☆☆. ☆☆.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1] **6급 \$\$\$ 징계의결 및 특별승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생략”

그 결과,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6급 \$\$\$가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되었다.

2. 승진임용배수범위 밖의 자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 등 부적정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및 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2024. 6. 27. 행정안전부예규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르면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40%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명 가산하여 산정하고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 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한편,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및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과 외국에서 근무·유학 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의 휴직(이하 “해외동반휴직”이라 한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하지 않고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은 휴직기간의 2분의1을 반영하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하는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고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6급 근속승진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일 현재 직렬별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경력 및 휴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부분은 재직기간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하여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그 수의 40%를 근속승진 가능인원으로 확정된 후 결원수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적용하여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있는 자가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 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 ☆☆. 6급 근속승진 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심의일 현재 **7급 \$\$\$의 경우 7급 재직기간 내 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유학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1/2만 반영하였을 경우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7급 \$\$\$ 또한 7급 재직기간 내 해외동반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3년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중 최초 1년만 반영하였을 경우 7급으로 11년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상기 2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을 6급 근속승진 대상인원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40%를 적용[6×40%=2.4(3명)]하여 3명을 근속승진 가능인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2] ☆☆☆☆. ☆. ☆☆.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산정현황 “생략”

그리고, ☆☆☆☆. ☆. ☆☆.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7급 \$\$\$ 및 **7급 \$\$\$ 등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명의 대상자들을 제외한 총 4명의 40%를 반영한 결원수 2명에 따른 승진배수범위(5배)가 적용되지 않고 총 6명의 40%가 반영된 결원수 3명에 따른 승진배수범위(4배)가 반영된 상태에서 **7→6급 승진후보자명부 12번까지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승진임용될 수 없었던 승진후보자명부 [12번] **7급 \$\$\$을 포함하여 [1번] **7급 \$\$\$, [2번] **7급 \$\$\$이 각각 6급 근속 승진자로 의결되어 ☆☆☆☆. ☆. ☆. 6급으로 승진임용되었다.

그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승진임용배수 범위가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승진임용배수범위 밖의 자가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되었다.

3. 인사위원회 의결을 따르지 않고 7급 근속 승진대상자 중복의결 등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7조에 따르면 근속승진된자의 신분변동 시에는 발령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주시 가과에서는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7급 이하 우대 및 근속승진의 경우 매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대상자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7급 이하 우대 및 근속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의결자로 결정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인력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다음달 1일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근속승진자로 결정된 대상자가 다음회차의 승진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또 다시 승진후보자로 등재되어 재 승진의결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 ☆. ☆☆. ☆☆☆☆년 ☆월 근속·우대 승진 대상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중 **8급 \$\$\$의 경우 7급 근속승진자로 의결되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결정 및 내부 인력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8→7급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및 **7급 근속승진임용 등을 하지 않은 채 ☆☆☆☆. ☆. ☆. ☆☆☆☆년 하반기 4급 이하 승진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이미 **7급으로 근속승진의결된 \$\$\$을 또다시

**8→7급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시켜 **8급 \$\$\$이 **7급으로 일반승진의결되도록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7급 \$\$\$을 일반승진자로 관리하고 있다.

[표 3] 인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및 인사위원회 중복 승진의결 현황 “생략”

그 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8→7급 1명이 승진임용 되지 못하였다.

4.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효력 기간이 지난 자 신규임용 등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다수인을 대상을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하도록 되어있고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에 따른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 안전번호 16-1310)」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 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우수 인재 추천 채용에 따른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 등과 달리 해당분야 자격증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된 자의 경우에는 합격 후 1년이 지나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신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의 효력기간 내에 임용관련 절차를 완료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년도 제*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분야(○○○○○○○) 자격증 보유로 응시하여 ☆☆☆☆. ☆. ☆☆. 최종합격한 ****서기보 \$\$\$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 시점인 ☆☆☆☆. ☆. ☆. 지방****서기보(시보)로 임용 하였다.

[표 4]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 기간이 지난 자 신규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의 효력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5. 조정할 수 없는 직렬을 대상으로 후속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직렬별(복수·단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요인을 책정할 때에는 결원 발생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복수직 정원이 있는 경우 그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간에 직렬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후 승진임용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 ☆. ☆☆. 4급 이하 승진인사를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6급과 ***6급은 복수로 규정되지 않아 후속 승진이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6급 결원에 따른 후속으로 **7급 1명을 후속승진 임용되도록 하였고, ☆☆☆☆. ☆. ☆. 4급이하 승진인사위원회에서는 **6급과 ****6급이 복수로 규정되지 않아 후속승진이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6급 결원에 따른 후속으로 ****7급 1명을 후속승진임용하였다.

[표 5] 복수직 정원 없는 직렬간 조정 후 승진 현황 “생략”

그 결과, 복수직렬로 규정되지 않아 승진할 수 없던 직렬인 **6급 1명, ****6급 1명이 각각 승진임용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④ 관련자 BBB(병합), CCC(병합), DDD(병합), EEE(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상시학습 제도 운영에 따른 승진임용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70점)과 경력평정점(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주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70점)과 경력평정점(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5월 30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해야만 하며 만약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 등이 발생하여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조정 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 ☆☆. ☆☆. 경주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방**서기 \$\$\$의 경우 전체서열이 26번(62.5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인사행정시스템에는 17번(66점)으로 입력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 등의 절차없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 1] ☆☆☆☆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내역 “생략”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인사 행정시스템에 반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변경되었다.

2.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과소 적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 제7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에 따르면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80시간 이상, 종전 기능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간 30시간 이상을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주시에서도 매년 ‘상시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경주시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시간 현황 “생략”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5급이하	종전기능직공무원	종전별정직공무원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자료 : 경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5급 이하의 일반직의 경우 연간 최저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종전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30시간 이상으로 반영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정하여 미이수자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종전기능직공무원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들의 연간 최저이수시간을 30시간으로 반영 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산정하여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반영하였을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8→7급 \$\$\$ 등 22명을 승진임용 하였다.

[표 3]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과소설정에 따른 승진임용 현황 “생략”

그 결과,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8→7급 \$\$\$ 등 22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 CCC, DDD(병합), EEE, FFF(병합)는 훈계 처분하시고, GGG, HHH, III, JJJ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경주시 ☞☞☞☞☞☞ 지정을 위한 ☞☞☞☞ 용역’ 계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 1] 경주시 ☞☞☞☞☞☞ 지정을 위한 ☞☞☞☞ 용역 계약현황 “생략”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용역의 경우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방법¹⁾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재무비율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

1)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

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제2장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추정가격²⁾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경주시 ☞☞☞☞☞☞ 지정을 위한 ☞☞☞☞ 용역’의 재무비율 평가 서류로 관련협회 조사·통보 자료,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등”이라 한다.)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완·추가 요구를 하여야 했고,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비율을

2) 경주시 공고 제☆☆☆☆-***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272,727천원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주식회사’의 재무비율 평가를 하면서 기업진단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보완·추가 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업체가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서류’를 정당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평점 95.38점으로 부적정하게 적격 판정하였다.

[표 2] 경영상태 평가 내역 “생략”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 주식회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재무비율 평가를 최저등급으로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2.98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 주식회사’와 ☆☆☆☆. ☆. ☆.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신뢰성이 저해되었으며, 차 순위 입찰자들은 적격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 3] 적격심사 결과 “생략”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③ 관련자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경주시 나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가과에서는 위 사업의 지연 배상금 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 ❁❁❁❁ ❁❁❁❁ ❁❁❁❁ 정비공사 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1. 행정절차 없는 시공중지 지시 등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9절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상황에서 동절기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은 동절기 공사 중지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전라북도에 통보³⁾한 바 있다.

한편, 경주시 나과에서는 수행중인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 ☆☆. ☆☆. ~ ☆☆☆☆. ☆. ☆☆. 기간동안 동절기 시공중지 명령[나과-**(☆☆☆☆.☆.☆.)호] 및 해제[나과-*****(☆☆☆☆.☆.☆☆.)호]를 통보하였으나, ‘❄️❄️ ❄️❄️❄️❄️ ❄️❄️❄️❄️ ❄️❄️❄️❄️ 정비공사’의 경우 준공기한(☆☆☆☆. ☆. ☆.)이 임박하였다는 사유로 시공중지 명령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 ☆. ☆☆. 위 공사의 최초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콘크리트 포장 표면의 변색 등 부실시공이 의심되어 ☆☆☆☆. ☆. ☆. 강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이 목표 강도에 현저히 미달되어 ☆☆☆☆. ☆. ☆☆. 재시공

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게시판(2024.4.3.)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컨설팅 사례 게시판(2024.2.22.) 게재 내용

지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경주시 나과에서는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이 의심될 경우 적절한 기간을 산정하여 재시공 지시를 통보하여야 했고, 동절기 시공중지 기간동안 일반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공중지 명령을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동절기 시공중지 명령 기간 중에는 일반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시공 지시를 공문으로 통보[나과-****(☆☆☆☆. ☆. ☆☆.)호]하였고, 위 공문에 동절기 시공중지 명령 기간이 종료된 이후와 최저 기온이 영상인 날에 시공할 것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시공업체와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시공중지를 지시하였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재시공 지시일인 ☆☆☆☆. ☆. ☆☆.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인 ☆☆☆☆. ☆. ☆☆.까지의 지체일수(31일)에서 재시공 지시 통보일인 ☆☆☆☆. ☆. ☆☆.을 제외하여 총 지체일수를 30일로 산정하였고, 유선 등으로 시공중지를 지시한 동절기 시공중지 명령 기간(15일) 및 최저 기온이 영하인 날(6일)을 제외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최종 지체일수가 9일이라는 내부공문[나과-****(☆☆☆☆.☆.☆☆.)호]을 생산하여 회계과에 전달하였다.

[표 2] ❄️ ❄️❄️❄️ ❄️❄️❄️ ❄️❄️❄️ 정비공사 지체일수 산정내역 “생략”

그 결과,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시공중지를 지시하고, 지체일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한 내부공문 등을 가과에 전달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적정하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지연배상금 부과일수(지체일수) 산정 부적정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 및 다”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되,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그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절 “1-바”에 따르면 준공 등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내지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등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준공기한 이후에 재시공 지시를 통보한 사업의 경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일수는 제외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했으며, 적정하게 산정된 지체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업체와 3개월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는 공문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 정비공사’의 지체일수를 위 [표 2]와 같이 부적정하게 산정한 나과 내부공문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지체일수를 9일로 산정한 후 지연배상금을 부과[가과-*****(☆☆☆☆.☆.☆☆.)호]하였고, 산정된 지체일수가 9일임에 따라 별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문을 각 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표 3] ☞☞ ☞☞☞☞ ☞☞☞☞ ☞☞☞☞ 정비공사 지연배상금 산정 내역 “생략”

그 결과, 정당하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일인 ☆☆☆☆. ☆. ☆☆.부터 ☆☆☆☆. ☆. ☆☆.(3개월)까지 \$\$\$\$ (주)는 경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에도 경주시 다면 등 3개 부서와 총 4건, 61,399,000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지방계약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 (주) 수의계약 체결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 DDD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를 접수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미이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⁴⁾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4)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우선 적용되고, 담배소매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선행되나, 편의점·슈퍼마켓 등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없는 자유업종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업무편람」, 2021.)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를 통보받은 경우 개별법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편의점·슈퍼마켓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받은 업소 중 7건에 대하여 7,000천 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생략”

2. 공무원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배치 부적정

「청소년 보호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장소 등을 검사·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주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 분야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조사·검사 및 의견청취부터 처분 통보·체납독촉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된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업무를 임용된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년 ☆월 ☆일 정기인사를 통하여 공무원

직원 \$\$\$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법령상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검사 및 의견청취를 포함한 처분 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2] 청소년 보호법 행정처분 관련 공무원 업무처리 현황 “생략”

그 결과,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 권한이 없는 공무원 직원이 행정처분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훼손되고 처분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된 업소에 과징금 7,000,000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업무는 임용된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계약방법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경주시 가과 및 나과에서는 상수원관리와 상·하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업무를 추진하였다.

1. 특허를 이유로 한 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용역·구조·성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 및 나과에서는 특허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대용·대체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하여야 하며, 대용·대체품이

있는데도 단순히 특허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도 사업부서인 경주시 나과는 ☆☆☆☆년 ‘○○○○○○ ○○○○○○○○○ ○○○○ 제작·설치’(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물품(제작·설치) 구매를 위해 대용·대체가 가능한 유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대용·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구성하여 운영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결과⁵⁾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주)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표1] 유사특허 업체별 물품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생략”

또한 계약부서인 경주시 가과에서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프리스⁶⁾를 활용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유사특허 등 대용·대체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나과에서 작성한 수의계약요청사유서⁷⁾를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 ☆. ☆. 대구지방조달청에 물품계약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대구지방조달청에서는 특허물품 수의계약 요청에 따라 ☆☆☆☆. ☆. ☆☆. 대용·대체품 유무에 대한 재확인 요청⁸⁾이 있었고, 나과에서는 대용·대체가 가능한 유사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있는데도 ☆☆☆☆. ☆☆. ☆.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⁹⁾을 하였다.

5) ☆☆☆☆. ☆. ☆☆.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수의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6) 키프리스는 지식재산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임

7)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대체대용품 검토사항에 ‘본 사업 성공을 위한 ○○○○○○○○○ ○○○○○○ ○○○○ ○○○○○○는 처리 수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허제품인 본 제품 외에는 대체 대용품이 없음’으로 기재함

8) 대구지방조달청 다과-****(☆☆☆☆.☆☆☆.) 『특허 수의계약 요청에 따른 구매협의 및 보완 요청(○○○○○○○○ ○○○○○○○○○○○ ○○○○ 경사관 제작·설치)』

9) 나과-*****(☆☆☆☆.☆☆☆.) 『특허 물품 수의계약 보완자료 제출(○○○○○○○○ ○○○○ ○○○○○○ ○○○○ 제작 설치)』

그 결과,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로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표2] 수의계약 체결 현황 “생략”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추진한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¹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려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관급자재(☞☞☞ ☞☞☞☞)’구매를 추진하면서 해당 물품이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계약업체가 여성기업이란 사유만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없이 아래 [표 3]과 같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표3] 수의계약 체결 현황 “생략”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의견적 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당한 자격을 가진 업체의 공정한 수의견적 입찰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 DDD,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및 고발 미조치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와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사업정지 처분 부적정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중¹¹⁾ 처분하고,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¹²⁾에 따른 사업정지

1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처분기준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위 금지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이동판매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주유(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2회) 및 제10호(1회) 위반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7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2회)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관련 사업정지 처분 현황 “생략”

2.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부적정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1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은 최근 3년간으로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을 1/2의 범위에서 감경¹³⁾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감경 처분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감경처분한 사업정지 일수를 계산식¹⁴⁾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에 각각 사업정지 처분(1/2 감경) 15일과 45일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산정 계산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의 기준금액(상한액)에 1/2을 감경하여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관련 과징금 처분 현황 “생략”

3.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부적정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13)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4)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에 따르면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는 주간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한국 석유관리원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4호에는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주간 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하지 않은 (지연보고 포함) 주유소 대해 1회 위반은 경고, 최근 6개월간 2회 위반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석유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주간보고를 하지 않은 횟수가 최근 6개월간 2회인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 ☆. ☆☆. '\$\$\$\$\$'에 주간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 ☆. ☆☆. 같은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2회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하여야 하나, 경고 처분을 하는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

4.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고발 미조치 부적정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0호에 따르면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무등록 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에서 규정된 고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아래 [표 5]와 같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석유사업법 위반업체 관련 고발 등 미조치 현황 “생략”

그 결과,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고발 미조치 등으로 인해 석유사업법 위반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석유사업법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는 훈계 처분하시고, DDD,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 미예치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방지 조치 및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비 예치, 복구 준공검사, 복구 대집행 등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산림청장 등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 예치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¹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제38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불법으로 산지전용 되어 복구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재해방지 및 복구에 대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불법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복구의무자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등이 필요할 경우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하여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불법으로 산지전용 되어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불법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6건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통지하지 않았다.

[표 1] 불법산지전용 복구비 미예치 현황 “생략”

2.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명령을 하는 경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15) 제37조 제1항 제7호, 제39조 및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불법산지전용의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 2]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어야 했다.

[표 2]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천 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천㎡ 미만	250	500	1,000	
1천㎡ 이상 1만㎡ 미만	500	1,000	2,000	
1만㎡ 이상 10만㎡ 미만	1,500	3,000	6,000	

* 자료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 발췌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불법산지전용으로 산지복구 명령된 500면 500리 산***번지 등 4건에 대하여 복구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3] 불법산지전용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미부과 현황 “생략”

3.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부적정 조치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0호¹⁶⁾에 의거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경주시 가과에서는 산지전용신고 등을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행위자에게 복구명령을 하여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건 후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복구완료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수사 후 사건송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4]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수사 등 미조치 현황 “생략”

그 결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전용된 산지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산지 복구설계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500,000원의 과태료 부과** 및 복구완료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수사 후 사건송치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 FFF는 **훈계** 처분하시고, GGG, HHH, III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6) (벌칙)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적정

경주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오수처리를 위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생략”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부적정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일정기간¹⁷⁾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17)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통지를 한 날에서 110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연 등으로 사용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적합 통지를 한 1일 처리용량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적합 통지 등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붙임 1]과 같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08일이 지나 검사하는 등 115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부적정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표 2]의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기준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표 2]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기준

구분	기준	점검주기	대상시설 수	비고
계			146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34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	연 1회 이상	112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 지도점검을 아래 [표 3]과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기준

(단위 : 회/년)

지 역			수변·특정 지역	기타지역
등 급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2m³/일 초과, 단, 수변·특정지역은 1m³/일 이상 등)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2. 처리용량 50m³/일 미만	2 1	1 1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2. 처리용량 50m³/일 미만	2 1	2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2. 처리용량 50m³/일 미만	4 2	2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정화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인용 이상)			1	1

* 자료 : 「통합지도점검」 별표2 정기 지도·점검 기준 발체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년 부터 ☆☆☆☆년까지 실제 점검율은 0.8 ~ 3.2% 밖에 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생략”

또한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점검 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붙임 2]와 같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 처리시설 131개소를 점검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 및 방류수수질기준 위반¹⁸⁾ 여부 등 시설 적정 운영·관리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 하수도법 제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처리용량 등에 따라 700 ~ 5,000천원)

2. 특정토양오염도검사 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처분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¹⁹⁾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주기²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그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3조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²¹⁾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조 제1항에

19)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

20) 1. 토양오염도검사주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발췌)
가. 제12조제1항 각 호(완공 등)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2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적기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주기가 도래할 경우 검사주기 안내를 통해 대상시설 설치자가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연도에 검사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여부를 확인 후 검사주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검사도래 연도에 오염도검사를 하지 않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토양오염도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래 [표 5]와 같이 관리대상 시설 2개소가 검사를 하였어야 하는 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5] 오염도검사 미이행 사업장 현황 “생략”

그 결과,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의 위험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는 훈계 처분하시고, JJJ, KKK, LLL, MMM, NNN, OOO, PPP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 및 지연검사 현황 “생략”

[붙임 2]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점검 미이행 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통 보·시 정 요 구

제 목 처분의무대상 농지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과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처분유예대상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부적정

경주시 나과에서는 가과로 ☆☆☆☆.☆.☆☆. ‘☆☆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대상자 명단을 통지하였으며, ☆☆☆☆. ☆. ☆☆. 농지의 처분유예 대상자 명단을 통지하며 농지전용 시 유념하여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이하 “농지 처분예규”라 한다.) ‘Ⅵ.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르면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처분의무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민원 사례집」에는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주시 가과에서는 ☆☆☆☆.☆.☆. ☞☞읍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소유주(\$\$\$)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 ☆. ☆☆. 동일 필지에 수허가자의 명의로만 변경(수허가자 : \$\$\$)되어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사용동의를 받아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을 목적으로 전용을 신청한 것인지, 소유주의 농지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확인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고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나과가 당초 ☆☆☆☆.☆☆. 처분의무통지한 이후 ☆☆☆☆.☆☆. 농지처분유예된 필지로 통보받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제3자인 수허가자(\$\$\$)가 소유주(\$\$\$)의 토지승낙을 받는 형태로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 단독주택 및 창고건립 목적의 농지전용을 협의하였으며, ☆☆☆☆.☆☆.☆☆.까지 농지처분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 건축주 변경 신고에 따른 수허가자 명의를 소유주(\$\$\$)로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내어 주었다.

[표 1] 읍읍 읍리 *****번지 농지전용협의 내역 “생략”

그 결과, 처분의무대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해서는 안되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소유주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해 전용을 신청하였음에도 허가를 하는 등 농지처분의무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되었다.

2.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 미이행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처분예규」 ‘3.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에 따르면 읍·면장이 처분 대상 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 대상농지를 결정하고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예규 ‘4. 농지의 처분통지’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나과에서는 소관 읍·면·동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 대상의무로 농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필지에 대하여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처분 대상 농지 결정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읍, ☞☞읍, ☞☞면, ☞☞동, ☞☞동에서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2021년도 ☞☞동 ***-*번지 등 6필지 (소유자 5명) 및 ☆☆☆☆년도 ☞☞읍 ☞☞리 ***번지 등 3필지(소유자 5명)가 휴경 및 처분대상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여 농지정보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필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 결정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처분의무통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처분대상농지(☆☆년도 실태조사분) 실태조사결과 및 처분의무통지 미이행현황 “생략”

그 결과, 농지를 취득한 자가 휴경으로 농지의 취득목적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무 통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농지전용 업무 및 농지처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휴경으로 조사된 경주시 숲동 ***-* 등 9필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읍 읍리 ****-*번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관련자 AAA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 ⑤ 관련자 BBB, CCC, DDD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전용농지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읍
내 용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불법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업무 및 제54조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농지이용실태조사 부적정

「농지법」 제49조에는 시·군·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4.조사사항은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과 경작현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에는 실태조사는 농지 전수에 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와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항목에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농지정보시스템 이용실태조사 탭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농지전용 현황을 확인하고 불법전용 여부 최종확인 후 불법 전용 시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읍에서는 농지의 이용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경으로, 불법 전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전용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작성하여 농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읍리 ****, 같은 리 ****, 같은 리 ***-*번지, 읍리 **-*, 같은 리 **-*, 같은 리 **-*번지에 대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해당 6필지가 야적장 및 공장부지로 활용되어 있었음에도 [붙임]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농지이용시스템에 기재하였다.

2.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관리 소홀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가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읍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농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지의 원상회복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리 ****, 같은 리 ****, 같은 리 ***-*번지, ☞☞리 **-*, 같은 리 **-*, 같은 리 **-*번지가 야적장 및 공장부지로 불법전용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불법 전용된 농지에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및 불법전용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가읍 ☞☞리 ****번지 등 6필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읍 ☞☞리 ****번지 등 6필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내역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게임제공업소의 등록과 폐업, 행정처분, 지도·감독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써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1차 위반했을 때 시장·군수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 경주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며, ☆☆☆☆. ☆.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미처분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현황 “생략”

1.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반영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비용의 항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 주변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산정한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시 품질관리비 계상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비(안전시설, 안전물품, 교통신호수 등)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조정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 정비사업’의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비용을 계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오반영된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오반영 현황 “생략”

2. 설계도서 검토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설계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한 설계기준과 단가율 등을 확인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 교통부 훈령)에서도 관계법령, 설계기준, 현장조건 등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사항 외에 별도의 관련법규, 기준,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1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에 따르면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인이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 및 착공내역서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령, 설계기준, 현장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를 확인하여 건설공사 발주 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 후 착공내역서를 법령이나 계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오류 사항에 대하여 설계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설계관련 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중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표 3] 설계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 오반영 현황 “생략”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인해 오반영된 공사금액 235,119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한 조치없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내역을 작성하고, 과다·과소하게 계상된 **사업비 235,119,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품질 및 하자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구 나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 \$\$\$\$\$\$(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 ☁☁☁☁☁☁ ☁☁☁☁’에 대한 공사계약 (계약금액 5,455백만원)을 체결하고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 ☆. ☆☆. 준공하였다.

[표] 공사 현황 “생략”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연면적 5,986.77㎡인 ‘☁☁ ☁☁☁☁☁☁ ☁☁☁☁’의 품질시험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

하였고, 품질시험계획 승인 여부 및 승인 내용에 대한 서면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2. 하자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관리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 ○○○○○○○○ ○○○○○’ 준공(☆☆☆☆. ☆. ☆☆.) 후 ☆☆☆☆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누수, 바닥 균열, 미장 및 도장

균열 등 다수의 시공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시킨 바 있고, 이는 위 “1”항에 따른 공사 단계의 품질관리 소홀이 누수 등 다수의 하자 발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 아래 [그림]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균열 및 탈락 등의 추가 하자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그림] 추가 하자 현황 “생략”

그 결과, 건축 공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아 공공 건축물의 하자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하자검사 실시 후 추가 발생 하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시 정 요 구

제 목	경주 ☁☁☁ ☁☁☁ 건립공사 추진 및 ☁☁☁ 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 ☆☆. ☆☆. (주)\$\$\$\$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경주 ☁☁☁ ☁☁☁ 건립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계약금액 632,833천 원)을 체결하고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 ☆☆. ☆☆. 준공하였다.

1. 경주 ☁☁☁ ☁☁☁ 건립공사 공용건축물 협의 등 미이행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때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고,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 후 해당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경주 ☁☁☁ ☁☁☁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에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공사계획에 대한 착공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경주 ㉡㉡㉡ ㉡㉡㉡ 건립공사 추진현황 “생략”

그 결과, 경주 ㉡㉡㉡ ㉡㉡㉡은 「건축법」 제21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공용건축물 협의 및 착공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립되었으며, 공공복리 증진과 건축행위의 적정한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협의 제도 및 착공신고 절차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였다.

2. 경주 ㉡㉡㉡ 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공사완료 통보와 함께 제출된 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필요한 권리 보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및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필요한 권리 보전 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 내 공용건축물은 ☆☆☆☆년경 최초 건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축되어 왔고, 아래 [표 2]와 같이 ㉠을 포함한 총 14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공사완료 통보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표 2] 경주 ㉠ 내 공용건축물 현황 “생략”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내 ㉠을 포함한 공용건축물을 건립·사용하면서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완료를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건축물대장 생성의 전제가 되는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공용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못했고, 건축물대장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공유재산 대장의 작성·비치,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될 수 없었다.

특히, ☆☆☆☆년 경주시 종합감사에서 강당(현 ㉠)을 건축협의 없이 건축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 건립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용건축물 협의 및 공사완료 통보를 미이행하여 같은 유형의 부적정 사례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공사완료 통보 미이행으로 인해 ㉠ 내 공용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이 장기간 생성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 관리에 관여하는 단체 등이 해당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이용·점유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유화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법」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편입·관리를 위한 등기·등록 및 대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건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용 건축물의 건축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의 관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경주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합니다.(기관경고)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 ☁☁☁~☁☁☁☁☁ 도로확포장공사’를 ☆☆☆☆. ☆. ☆☆. \$\$\$\$ (주) \$\$\$과 계약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 현황 “생략”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신된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상황을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착공 통보를 하지 않고, 오탉방지막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²²⁾하지 않는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한 후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22)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 오탉방지막 관리현황 기록 및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관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될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는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높이10미터 이상인 천공기 및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고,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포함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 ☆. ☆☆. 승인 통보 하였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천공기, 항타기,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포함된 공종을 ☆☆☆☆. ☆☆월부터 ☆☆☆☆. ☆월까지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시설공 손료(SHEET PILE, H-BEAM)에 대하여 경비성 단가로 반영하지 않고 노무비, 재료비 단가로 반영하여 5,004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되메우기 및 다짐 공정을 추진하면서 콤팩트 다짐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진동롤러로 다짐하였음에도 부적정하게 계상된 2,901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413호, 2024. 12. 13.)」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된 교명주는 차도 쪽으로 돌출된 구조로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량에 접근하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더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으로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의 우려가 높은 교명주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량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2021. 1.)」에 따르면

교명주는 “장대교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소교량은 중분대 미 설치시 교명판 1개, 설명판 1개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에 교명주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13,088천 원(제경비 포함)을 부적정하게 계상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로 인해 공사원가가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금액 20,993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20,993,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정비사업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 ☁☁☁☁☁ ☁☁☁☁ 정비사업’을 ☆☆☆☆. ☆. ☆. \$\$\$\$(주) \$\$\$과 계약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다음 [표 2]와

같이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중급기술인 1명,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의 품질관리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억원 이상~1000억원, 연면적 3만~5만㎡ 이상		"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500억원, 연면적 5천~3만㎡ 이상		20㎡ 이상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억원 이상~100억원		"	초급1명 이상

*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내용 발췌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종류 등을 규정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계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착공 시 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자(중급기술인 1명, 초급기술인 1명 이상)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사업자가 ☆☆☆☆, ☆, ☆☆, 착공신고서 제출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품질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품질시험계획서 및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약 1년간 5회의 품질관리자가 변경되었으며, 그 중 아래 [표 3]과 같이 4회에 걸쳐 관련 법령에 규정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

[표 3] 품질관리자 배치 현황 “생략”

그 결과, 자격이 없는 품질관리자가 해당공사에 배치되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였고, 부실시공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회신된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상황을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착공 통보를 하지 않고, 오탉방지막 및 방음패널 설치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²³⁾하지 않는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23)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 시 오탉방지막, 방음패널 관리현황 기록 및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실정보고를 받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 설치 후 복구 시 기층 100mm포장 후 향후 표층 50mm 포장으로 반영되어 있는 설계를 아무런 비교 검토없이 기층 150mm포장 후 향후 50mm 절삭 및 덧씌우기 공종으로 ☆☆☆☆. ☆☆. ☆☆.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158,620천 원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그리고 간접공사비로 계상된 환경보전비의 경우 사업구역이 넓고 공사기간이 길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만 ☆☆☆☆. ☆☆. ☆☆. 적절한 검토없이 살수면적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실정보고를 승인하였으나, ☆☆☆☆. ☆. ☆☆. 살수면적 조정없이 실정보고를 접수한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142,483천 원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금액 301,103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301,103,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구조물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도로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외 2건’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행정절차 부적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 제1조의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한 사항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경주시 가과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에 대한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해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공사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착공 및 공사 중지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협의 내용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를 추진하면서 ☆☆☆☆. ☆☆. ☆☆. 공사 착공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착공 및 공사 중지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 내용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지 않는 등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재해 저감시설이나 예방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 미지정, 관리대장 부재 등 협의내용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품질관리계획서 발주청 미승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시공사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 승인을 하여야 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 ☆. ☆☆.에 시공사에서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처리하여야 하나 승인 없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계획 등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3.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주시 가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를 추진하면서 ① 교량 구조물 시공 시 가공이 불필요한 철근 33.04Ton이 산출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철근가공 물량 조정 없이 6,600천 원을 미감액 조치하였고, ② 기존 교량 철거 이후에 시공사가 고재 처리를 하여 설계변경으로 고재 처리 비용 7,770천 원 반영이 필요하나 미반영하는 등 총 공사비 14,3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다.

그리고 ‘○○○○ ○○○○○’를 추진하면서 ① 톤마대쌓기및혈기 시공 시 실제 설치 경사(S) 1:0.5를 반영한 결과, 톤마대 및 파형강관 등 물량 감소가 발생하여 10,240천 원의 감액 조치가 필요하고, ② 기존 교량 철거 이후에 시공사가 고재 처리를 하여 설계변경으로 고재 처리 비용 10,230천 원 반영이 필요하나 미반영하는 등 총 공사비 20,4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설계 오류 및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공사비 34,84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34,84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고, CCC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경주시 가과에서는 ‘❀❀ ❀❀❀❀❀❀❀ ❀❀❀❀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절차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및 항타 및 항받기를 사용하고,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포함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판정 후 승인 통보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이 포함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단계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판단의 의무가 있는 발주청에서는 별도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받지 않은 채 ☆☆☆☆. ☆☆. ☆☆.에 승인 통보를 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설계변경 시 야간할증 반영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5절-5에 따르면 야간작업 시행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야간작업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시공사 요청에 따른 야간작업 할증 실정보고를 ☆☆☆☆. ☆☆. ☆☆. 승인한 이후 ☆☆☆☆. ☆. ☆☆. 2회 설계 변경을 통해 부적정하게 증액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공사비 16,02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 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따라서 경주시 가과에서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공사에 대해서 ☆☆☆☆. ☆☆. ☆☆. 1차 설계 변경을 통해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물가

상승분을 정산조치 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산 소홀로 인한 사업비 64,94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80,971,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